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8. 25
기획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8년 8월 18일

· 회부일자 : 1998년 8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1998.8.25)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규린)

가. 제안이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IMF의 금융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
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율 폐지
그동안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2배)하던 것을 ⇒ 일반세율로 완화하여 과세토록 함.

※ 자동차 취득시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세율

- 취득세 : 1,000분의 20

등록세 : 1,000분의 50(단,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건영)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완화하여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을 과세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세감면에 대한 도의 세수결합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